

칼럼

장기채 주필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

인간 생명의 연장선으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60대는 노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용없는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 청년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기퇴직,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와 복지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은 100세 시대의 세상을 진입시켰다.

2050년경 한국은 전세계 소비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실버산업의 발달이 매우 느리다. 지금의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다.

국가연합(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09년 12.7%로 미국(17.1%)보다 낮고 중국(11.3%)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62.9%에 이를 전망이다.

공적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는 법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국민연금법에는 60세로 규정한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들쭉날쭉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로 인식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70세로 하자는 의견도 많다. 어쨌든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한국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년퇴직 한다는 '사오정'이나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들어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기계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11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 경력과 인생 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이 나라의 고령자 (65~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가 더 행복한 이유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社說

주취 소란 현행법으로 다루어야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공무원행방해처법 폭력행위가 따르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경찰의 현행법 체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이는 경우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찰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범죄처벌법 33조3항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조항을 고쳐 "(장소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중지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주취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맞물려 현행법 체포의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14조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범죄를 범했을 때 주취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법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단순 주취소란자의 처벌이 벌금 6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현행법 체포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권 행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일부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같은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공권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釋 紛 利 俗
어지러운 이로운 풍속

釋紛利俗

▷ 뜻: 이상(以上) 팔인의 재주를 다하여 어지러움을 풀어 풍속에 이롭게 함.

기고

이삼호 순천경찰서장



또 다른 강력범죄 '실종' 국민들 협조가 절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최근 부각된 또 다른 강력범죄로 실종사건이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발생초기, 단순 가출 미귀가로 판단되었던 것이 행적 불명을 넘어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사건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찰 대응의 아쉬움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추가하여 수색활동의 적법성 보장을

을 위한 입법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수색활동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개인이 용인할 수 있는 인내의 범위와 그 보상에 대한 법규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층이 용의 장소로 지목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각 가구마다 수색이 불가피한데 법률의 규정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으면 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통해 강제수색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수색을 위해서는 법률의 보완이 절실한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60%대에 머물고 있는 12시간내 실종자 발견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치안 수요자인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될 것이다.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Large advertisement for '화용성' (Hwaryongseong)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